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47 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김상욱 · 신성범 · 조지연

백종헌 • 박준태 • 서천호

성일종 • 박형수 • 주진우

박성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의 경우 국선변호·국선세무대리 ·법률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, 의뢰인 인 국민은 법률서비스 이용 시 변호사 보수 및 이에 대한 10%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음.

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청 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,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 은 국민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세금 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,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, 국민

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의2. 「변호사법」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용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 - 가. 「소액사건심판법」에 따른 소액사건의 대리
  - 나.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사건의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조력
  - 다.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및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리
  -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
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	대한 면세) ①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	
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<u>.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의2. 「변호사법」 제3조에 따
	른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용
	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것
	<u>가. 「소액사건심판법」에 따</u>
	른 소액사건의 대리
	나.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
	사건의 수사 및 공판 절차
	에서의 조력
	다.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
	행정심판 및 「행정소송
	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의
	<u>대리</u>
	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하는 것</u>
6. ~ 20. (생략)	6. ~ 2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